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318
----------	-----

2023. 11. 30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30. / 남양주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13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1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2023년도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단체협약」 체결에 따라 상조 관련 협약사항을 후생복지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소속 공무원 장례 서비스 지원 조항 신설(안 제7조제7호)
 - 2020년도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시행 중인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 조례에 명시
- 장례 물품 지원 조항 신설(안 제7조제7호)
 - 2023년도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계존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장례 물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 마련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체결된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본인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금과 직계 존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시 장례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소요예산은 24,000천원(장례(상조)서비스 9,000천원+15,000천원)을 추계하였으며,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, 도내 주요 10개 시의 장례지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순서	시·군	조례 내용	비고
1	수원시	직원 애사시 상조물품 지원	
2	용인시	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본인 상사 시 장례서비스 지원	
3	고양시	소속 공무원 상조회 및 순직,위험직무순직공무원 장례지원	
4	화성시	- 경조사 물품지원(소속공무원과 소속공무원 배우자의 조부모, 소속공무원의 형제자매) - 소속공무원, 소속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,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지원	
5	성남시	직원의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	
6	부천시	직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	
7	남양주시	- 공무원의 직계존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장례 물품 - 장례 서비스 지원	개정안 내용
8	안산시	-	
9	평택시	-	
10	안양시	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, 부모(배우자의 부모 포함), 자녀가 사망한 경우 상조서비스 지원	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